

 국토교통부		보도 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2. 17(월) / 총1매(본문1)
담당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·과장 황윤언, 사무관 김진호 ·☎ (044) 201-335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(1년→2년) 관련,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연합뉴스, 2.17(월).) >

◆ 정부, 입법예고 끝난 ‘청약1순위 2년 의무거주’ 규제 재검토
- “실수요자 피해 의견 많아 예외규정 마련 검토 중...방향 정해진 것 아냐“

□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따라, 투기과열지구 내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*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.

*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

□ 현재 입법예고(19.12.31.~20.2.10.)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로, 예외규정 마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,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